

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계획

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MOTIE



한국 LPG 산업협회
KOREA LPG INDUSTRY ASSOCIATION



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MOTIE



한국 LPG 산업협회
KOREA LPG INDUSTRY ASSOCIATION



I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개요

○ 개요

사업 목적 :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연료취약계층의 연료사용 환경 개선

사업 기간 : '13년 ~ '17년(5년간)

* 사회복지시설 1,800개소('13년 ~ '17년), 농어촌 마을 18개소('14년)

지원 예산 : '13년(42.9억원), '14년(69.9억원)

지원 조건 : 사회복지시설(정부 80%, 사용자 20%), 농어촌 마을(정부 50%, 지자체 40%, 사용자 10%)

시행 주체 : 사회복지시설(한국 LPG산업협회), 농어촌마을(지자체)

사업 내용 : 사회복지시설 및 농어촌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등 LPG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

기대 효과 : LPG 유통구조 단순화*로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완화, LPG 안전강화 및 사용 편의성 제고(도시가스 수준)

* 단단계 용기거래 방식 (충전소-판매소) → 단순화된 체적거래 방식 (벌크 공급)

– 높은 경제성 및 LPG유통구조 개선 효과 : 사회적 약자 지원

· LPG유통구조 개선(단단계 용기거래방식 → 단순화된 체적거래 방식)으로 평균 20~30% 연료비 절감 효과('13년 지원 결과 시설당 평균 27% 절감)

– 안정적 공급 및 LPG사용 환경 개선 효과 :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

· 소비처별 사용량에 맞춰 계획 배송, 비상시(천재지변 등) 취약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가능, LPG 용기 사용 대비 5배의 안전성향상 기대

○ 필요성

· 소득수준이 낮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연료비 부담이 대도시 거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역진적인 구조

–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· 심야전력 보급등의 대안이 있으나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 및 경제성 측면에서는 바람직 하지 못함

–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간 교차보조 문제 · 프로판 산업 영세성 가속등의 문제 야기

· 이에 따라, 적정 규모의 세대를 하나의 LPG소형저장탱크와 연결하여 배관을 통해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완화 및 도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 도모

* 동 사업은 국정과제에 해당 [2-7-51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]

II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

○ 14년도 사업 계획

사업목적 :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사회복지시설(노인 · 장애인 · 아동)에 소형 LPG저장탱크를 설치하고 배관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LPG공급

주무부서 : 산업통상자원부(가스산업과, ☎044-203-5235)

주관기관 : 한국LPG산업협회(프로판사업팀, ☎02-3411-5111~5)

지원항목 : LPG소형저장탱크 설치(토목 · 웬스포함), 공급배관(소비 설비까지), LPG보일러(필요시, 온수배관은 제외)

지원조건 : 지원항목에 한해 설계 예가를 기초로 입찰한 시공사 견적금액의 80%, 나머지 20%는 자부담

〈대상 시설 및 지원 규모〉

구 분	사회복지시설수	지원대상시설	2014년 지원 내용	
			개선규모	수혜인원
노인복지시설	4,249	1,524	290	10,150
장애인복지시설	452	172	50	3,150
아동복지시설	280	104	20	1,220
소 계	4,981	1,800	360	14,520

주) 자료출처 : 보건복지부 '12년 조사자료

○ 세부 추진 내용

사회복지시설 LPG용기(취사), 등유(난방)시설을 LPG소형저장탱크 및 고효율보일러로 교체(기존 생활 시설 대상에서 이용시설까지 확대)

– 개선비용 : 360개소×1,412만원/1개소×80%=4,065백만원

– 사업홍보 및 시설검수등 부대비용 : 225백만원

○ 세부 추진 계획

수요조사·선정 17개 시·도별로 설치 희망 사회복지시설(노인·장애인·아동 360개)에 대한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후 주관기관 제출
→ (사업운영위에서 시·도별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대상 확정)

설계·시공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설계용역후 권역별* 경쟁입찰

* 수도권(84), 강원권(34), 충청권(66), 대경권(49), 동남권(40), 전라권(74), 제주권(13)

가스 공급자 선정 적격 가스공급업체에 대한 사전등록제*를 운영, 사회복지시설은 등록된 공급업체와 가스공급계약 체결 추진(개별협상 방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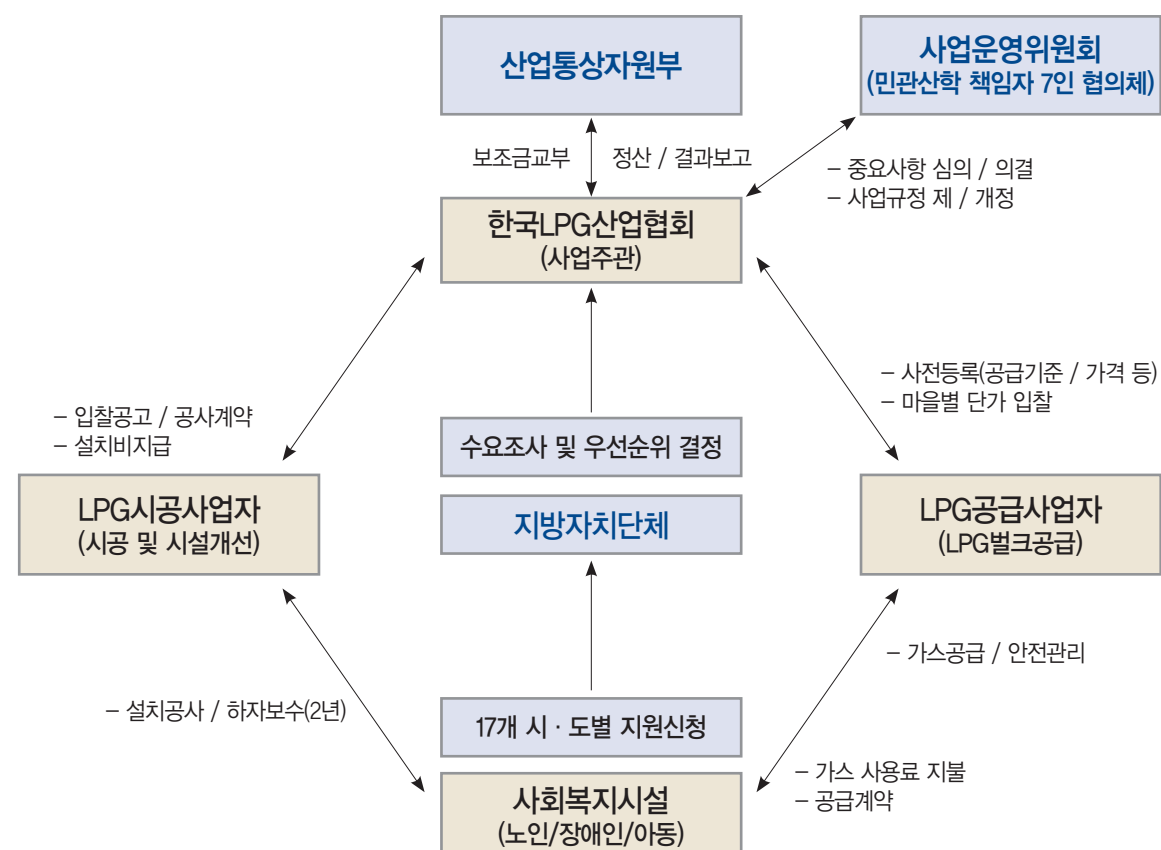
* LPG 공급업체(충전소·판매소)에 대한 적격성 심사(별크로리 공급실적, 안전관리 역량 등) 후 적격업체만 주관기관에 등록, '14.1월 현재 110개 업소 등록 완료

* 가스공급계약 : 표준계약(3~5년 계약기간) 및 사전등록 공급업체에 한해 계약 가능

* 가격기준 : [하한선] 수입·정유사 페트로넷 공장도가격 ~ [상한선] 집단공급사업자 오피넷 평균가격

매칭/관리 - 설치비 매칭(정부:자부담=8:2), 소유권(복지시설), 사업관리·감독권(주관기관)

○ 운영 프로세스



Ⅲ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사업

○ 14년도 사업 계획

사업목적 : 농어촌지역 에너지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LPG소형저장 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여 도 시가스 수준의 편의성 확보

개선규모 : 18개 농어촌 마을(9개광역도x2개마을)

시행주체 : 9개 광역지자체(경기·강원·충북·충남·전북·전남·경북·경남·제주)

개선규모 : 18개소(9개 광역도*2개소), 1개소당 총사업 3억원

소요예산 : 54억원(정부 27억원(5), 지자체 21.6억원(4), 자부담 5.4억원(1))

지원항목 : LPG소형저장탱크 설치(토목·웬스포함), 공급배관(매물배관·사용자배관), LPG보일러(필요시, 온수배관은 제외)

지원조건 : 지원항목에 한해 설계 예가를 기초로 입찰한 시공사 견적금액의 90%(정부·지자체), 나머지 자부담

○ 세부 추진 내용

농어촌마을 연료(LPG용기·등유·화목등) 개별 주문·공급방식에서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등 LPG 배관망으로 연료 공급

- 개선비용 : 18개소(9개 광역도 2개소) × 3억원* × 50% = 2,700백만원

* 농어촌 행정리 평균가구수 50세대 × 600만원(가구당소요비용)

○ 세부 추진 계획

MOU체결 9개 광역도 · 한국LPG산업협회간 사업 MOU체결 및 사업비 통장계설

수요조사 · 선정 : 9개 광역도별로 개선 대상 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결정후 주관기관 제출(3배수 이내 제출)

→ (주관기관은 제출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분석(기초설계 포함) 진행후 지자체 · 사업운영위 제출후 협의 선정)

* 수요조사 기준 : 향후 5년간 도시가스 공급계획 없는 지역, 30세대 이상, 공급배관 100m당 15세대 공급 가능지역

사업추진시 지자체 우선순위 기준(안)

㉠ 마을내 집적도 高, ㉡ 세대수 多, ㉢ 소득수준 低, ㉣ 도시가스 공급배관 遠 등

주민동의 대상 마을 주민설명회 개최(동의 확보 · 자부담안내)

설계 · 시공 설계용역 후 마을별 경쟁 입찰(지자체 또는 주관기관)

가스공급자 선정 주관기관에 등록된 LPG공급자*를 대상으로 마을별 경쟁 · 제한입찰 추진(공급단가 · 기간등 시군구에 등록)

* LPG공급자는 개선 마을 소재 시군구에서 영업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함(안전관리 · 검침등)

* 가격기준 : [하한선] 수입 · 정유사 펌프로넷 공장도가격 ~ [상한선] 집단공급사업자 오피넷 평균가격

매칭/관리 - 설치비 매칭(정부:지자체:자부담=5:4:1), 소유권(주민공동소유)

○ 개선 전후 비교표



[기존 LPG용기 사용환경]

[LPG 배관망 설비 후 사용환경]

IV 향후 추진 일정

○ 시기별 주요 일정

시 기		사회복지시설 개선 (시설당 평균 10일 소요)	마을단위 LPG배관망 (마을당 평균 3개월 소요)	비 고
사 업 준 비	1월	- 광역지자체 담당자 설명회(1.24) - 수요조사 안내공문 시행		* 수요조사 세부 시행지침등 별도 안내
	2월	- 기초지자체 담당자 7개 권역별 설명회(초순~중순) - 2014년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 공고(2월 하순) · 사업절차, 예산집행방법, 사업규정등		
		- 수요조사 제출 마감(2월 말)	- 광역지자체 · 주관기관 MOU체결(선정 위임등)	
	3월	- 개선대상시설 확정(운영위) - 시설별 기초설계(단가포함) - 권역별 시공자 입찰공고	- 수요조사 제출 마감(3월 초) - 마을별 타당성 분석 (예가포함)	* 시공입찰공고 - 나라장터
시 설 개 선	4월	- 시공자 선정 및 계약 - 자부담금 입금 - 시설개선 공사 개시	- 개선마을 확정(지자체 · 운영위) - 마을별 기초설계(단가포함)	* 지자체 추경 진행(필요시)
	5월	(시공)	- 마을별 시공자 입찰 (시공)	
	6월		- 마을별 공급자 입찰	
	7월			
	8월			
	9월	개선 완료		
사 후 관 리	10월	- 정산 및 평가 * 예산집행 실적 및 결과 분석 * 소형저장탱크 관리시스템 DB 관리		
	11월			
	12월			

V 협조 요청 사항

○ 수요 조사

- 지난해 수요조사가 지연되어 전체 일정이 지연된 바 있으며 복지시설등에 자부담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시설은 설계후 취소

→ 수요조사시 복지시설 자부담 및 지원 범위 구체적 안내 필요

- 농어촌 마을단위 수요 조사 검토 사항

〈주요 조사 포인트〉

* 밀집도 : 공급배관 100m당 15세대 → 자연형성 부락 및 문화마을, 정보화마을 검토

* 저장시설 설치 부지 확보 여부 : 개인소유 부지에 설치하기가 어려우므로 마을회관 · 노인정등 공용부지가 마을 중심에 있는 경우가 적합하고 지하에 하수시설등 부등침하 우려가 있는곳은 설치가 불가함을 양지

○ 마을단위 예산 반영

- 올해는 9개 광역도로 한정하여 진행하나 향후 17개 시도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, 이에 따라 '15년도 지자체 예산 수립시 사전 반영 추진



〈참고1〉 복지시설 및 마을 수요 조사 방안

○ 사회복지시설

- LPG 소형저장탱크 및 공급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연료비 절감 · 안전성 향상 · 안정적인 연료공급이 가능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

- 수요조사 방안

가. 시행 시기 : 1월말 ~ 2월 말(약 1개월), 추가 신청 가능

나. 조사 절차 : 기초지자체 → 광역지자체 → 주관기관

다. LPG 소형저장탱크 대상시설 선정 과정은 시 · 도별 상황에 맞게 하되, 본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의 공정성이 이루어져야 함

라. (지자체 수요조사) 17개 시 · 도가 시 · 군 · 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 · 도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관기관에서 최종 확인 후 사업운영위에서 심의 · 의결

* 운영위 개선규모 조정 : 시 · 도간 과소신청 여부에 따른 규모조정

지원항목 - LPG소형저장탱크 설치(토목 · 웬스포함), 공급배관(소비설비까지), 고효율 LPG보일러(1기까지, 온수배관 제외)

마. 주요 선정지표는 시설의 ① 수용인원(예산투입효과 극대화), ② LPG 취사 · 난방 병행 여부(공급의 경제성), ③ 시공 용이성(예산 과다소요 방지) 등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함

※ 수용인원 시설종류별(노인 · 장애인 · 아동) 평균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특정 복지시설에 편중되지 않도록 붙임 「13년도 시도별 · 종류별 지원시설 배분표」 선정

※ 취사 · 난방 병행 수요조사 시 현 난방연료의 종류를 조사하여 LPG 난방을 병행하여 개선코자 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 순위 적용

※ 시공용이성 복지시설의 면적 · 자가/임대 여부를 조사하여 주관기관이 정한 표준시공비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 가능하도록 선정

바. 선정된 시설은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비중 정부부담 80%를 제외한 20%를 부담하고 설비의 소유권을 갖음(LPG공급자 선정은 주관기관의 공급자 pool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 해당시설이 자체적으로 선정)

○ 농어촌 마을단위

- 농어촌 마을에 도시가스 수준의 가스배관망을 설치하고 계량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여 안정적이고 저렴한 LPG공급
- 수요조사 방안
 - 가. 시행 시기 : 2월초 ~ 3월 초(약 1개월), 개선규모의 3배수 이내 신청
 - 나. 조사 절차 : 기초지자체 → 광역지자체 → 주관기관
 - 다. 수요조사는 9개 광역도별 상황에 맞게 하되, 본 사업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의 공정성이 이루어져야 함
 - 라. 주요 검토지표는 마을의 ① 세대수(예산투입효과 극대화), ② 밀집도(공급배관 100m당 공급가능 세대수) ③ LPG 취사·난방 병행 여부(등유사용 가구수 조사)등이 최소한 포함되어야 함
 - 마. 지원 대상 가능지역 및 다음 필요사항을 적시
 - 마을명: 검토대상 마을 명칭(ex : 상원마을, 하원마을)
 - 담당자 : 검토대상 마을 또는 공동주택 등 시·군·구 지자체 담당자(연락처 등)
 - 마을/공동주택 등 대표 : 검토대상 마을의 이장 또는 통장
 - 세대수 : 전체 세대수(밀집지역 우선순위 반영)
 - 도로상태 : 도로포장 상태(아스팔트, 보도블럭, 콘크리트 등)
 - 마을/주거면적 : 검토대상 마을 전체 면적
 - 취사 연료 : LPG용기/연탄 등
 - 난방 연료 : 등유(00세대), 심야전기(00세대), 화목(00세대), 연탄(00세대)등
 - 저장탱크 설치 부지 : 마을회관 등 공용부지 확보 여부(시유지 여부 체크)
 - 도시가스 공급 계획 여부 :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 가능성
 - 인접 도시가스 배관과 마을/집단주거지와 거리 : 0,000m
 - 지자체 검토사항 : 검토 대상지 지원 필요성, 제도개선 사항 등 건의

〈참고2〉 농어촌 LPG배관망 안전관리 체계 검토

○ 안전관리 규정

사용자 지위 LPG가스 특정사용자

- 마을단위 LPG배관망 공급사업은 사용자가 70호 미만이면 LPG가스 특정사용자에 해당*, 다만 70호 이상이면 집단공급사업자임

* 250kg~5ton의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(규칙 제48조제1항)

사업허가 별도의 사업허가 불필요

- LPG 시설은 가스시설 시공업등록자(건설산업기본법)만 설치 가능
- 설치후 시군구(가스안전공사 위탁)의 완성검사
- 공급자와 가스공급계약 체결

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주체

- LPG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는 가스공급자가 선임

*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각 1인 선임(총천/판매업자 겸임 가능)

- LPG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관리주체는 특정사용자임

검사 LPG사용자는 시설 설치 후 완성검사, 매년 1회 정기검사

○ 안전규정 검토

- 마을단위(70호 미만) LPG 배관공급 사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고, 특정사용자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만 규정

- 사용자는 LPG가스 사용시설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유지

- 특정사용자의 안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규정 준수의무만 부과한 것으로 사료됨

※ 사용자가 시설관리의 주체이므로 공도 상 매물배관 등의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행 공급자가 담당토록 계약하고 추후 법령개정을 통해 명문화 예정

○ 검토 LPG 집단공급사업과 특정사용자의 관련 규정 비교

구분	집단공급사업 (공급개소 70개소 이상)	LPG 특정사용자 (사용자 70개 미만)
허가 등의 구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단공급사업 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(70개소 이상)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※ 법 제3조제2항, 영 제2조제2항, 규칙 제5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저장능력 250kg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등 ※ 법 제27조제2항, 규칙 제48조제1항
가스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단공급사업자 ※ 법 제2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 ※ 법 제2조
기술검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상 ※ 법 제4조제1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다만, 특정사용자가 원할 경우 기술검토를 받을 수 도 있음 ※ 규칙 제48조제2항
수요자 시설에 대한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점검주체 : 집단공급사업자 ○ 점검주기 : 연1회 ※ 법 제11조제1항 및 규칙 제20조제1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점검주체 :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 ○ 점검주기 : 연1회 ※ 법 제11조제1항 및 규칙 제20조제1항
안전관리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작성주체 : 집단공급사업자 ○ 내용 : 집단공급 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자율검사(연1회), 종업원 교육·훈련, 위해발생시 조치·훈련 등 ○ 공사의 검토를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 ○ 공사는 연1회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실시 ※ 법 제12조 	—
시설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체 : 집단공급사업자 ※ 법 제13조제1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체 :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※ 법 제27조제1항
안전관리자 선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임주체 : 집단공급사업자 ※ 법 제16조제1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임주체 :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일 경우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 ※ 법 제16조제1항

구분	집단공급사업 (공급개소 70개소 이상)	LPG 특정사용자 (사용자 70개 미만)
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검주체 : 집단공급사업자 ○ 종류 : 안전성확인, 완성검사, 정기검사(연1회) 및 수시검사 ○ 범위 :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의 건축물 외벽(외벽에 계량기 설치시 그 계량기 전단밸브)까지 ※ 법 제18조 및 제19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검주체 :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○ 종류 : 완성검사, 정기검사(연1회) ○ 범위 :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의 건축물 외벽(외벽에 계량기 설치시 그 계량기 전단밸브)까지 ※ 법 제27조제2항
공급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단공급사업자는 허가관청에 공급규정 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요금 산정방법, 사업자와 사용자간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, 사업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 등 ※ 법 제24조 및 규칙 제44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급자(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)와 사용자간 공급계약 체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– 요금 계산방법, 안전점검 실시방법,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, 공급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 등 ※ 법 제23조 및 규칙 별표 20
안전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관리자 : 3년에 1회 공사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※ 법 제28조 및 규칙 별표 22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관리자 : 3년에 1회 공사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함 ※ 법 제28조 및 규칙 별표 22
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집단공급사업자가 보험가입 ※ 법 제33조 및 영 제16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일 경우,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가 보험가입 ※ 법 제33조, 영 제16조 및 규칙 제52조

〈참고3〉 농어촌 LPG배관망 구축 사례

○ 마을 개요

지역명	삼곡마을	개선의지	적극적
소재지	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	가스시설의 용도	취사 · 난방용
공급 규모	69세대	시공비(부가세별도)	약 415,000천원
기존 연료	취사 : LPG용기 난방 : 등유(50세대) · 심야전기(21세대) · 화목(1세대)		
세대당 시공비	약 6백만원	배관길이	1.7km (사용자배관포함)
검토 내용	①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는 지역이며 전형적인 농촌마을, 자부담 10%(약 60만원) ② 등유보일러 사용비율이 높아 LPG난방 효과 분석 및 심야전기와의 경제성 분석		

○ 시설 설치내역(설비제원 등)

설비명	용량(처리능력)	수량	비고
소형저장탱크	2.9톤 패키지	1	강제기화방식
소형저장탱크	1.0톤 패키지	2	강제기화방식
중형보일러	25,000kcal/hr	69	컨덴싱방식
소비설비	LPG보일러 가스렌지등 주방 가스 설비		
가스공급계통도	벌크로리 → 소형저장탱크 → 기화기 → 2단 1차조정기 → 2단2차 준저압조정기 → 메인배관 → 계량기 → 사용자배관 → 퓨즈콕 → 연소기		

○ 주요 시공비용

(단위 : 천원, vat포함)

설비명	용량(처리능력)	수량	견적가액
소형저장탱크	2.9톤패키지(조정기 · 기화기)	1기	18,000
탱크 설치비	토목/전기/설비		15,000
배관 설치비	매설/토목/포장	1,700m	279,250
LPG보일러	25,000kcal	69대	41,400
노출 배관 설치비	69세대/450천원	69세대	31,050
설계비용	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		14,500
인허가 및 기타			16,000
합계			415,200

○ 조감도

배관길이 : 1.7km

세 대 수 : 69세대

저장시설 : 2.9톤 1기(기화기 패키지)



○ 연료비 부담 개선 효과

연료비 개선 효과			
개선전		개선후	
취사	LPG(용기) : 15kg 31,425원/월	38%절감	LPG(탱크) : 15kg 19,410원/월
난방	보일러등유 : 55 ℓ 74,195원/월	33% 절감	LPG(탱크) : 38.7kg 50,078원/월
105,620원/월		총 약 34%절감	69,488원/월

* 3인가족 사용량 기준('13.12월)

** ① LPG(용기) : 전국평균 2,095원/kg, ② 보일러등유 : 전국평균 1,349원/ℓ, ③ LPG(탱크) : 1,294원/kg